

인권 및 성폭력 상담 Guide Book



무한한 울림이
만나는 여기, 인권센터!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인권 및 성폭력 상담 Guide Book



무한한 울림이
만나는 여기, 인권센터!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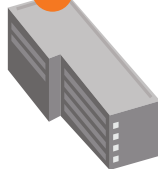
• 썩~ 인권 들어갑니다	6쪽으로 가세요
• 썩~ 성폭력 알아봅니다	14쪽으로 가세요
• 썩썩~ 인권센터 들어갑니다	22쪽으로 가세요
• 어쩌라Go? 이렇게 Going!	32쪽으로 가세요
사건 잘 대처하기	33쪽으로 가세요
나를 치유하다!	50쪽으로 가세요
• 잠시 멈춰, 숨고르기	60쪽으로 가세요
부록 1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정규정	69쪽으로 가세요
부록 2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75쪽으로 가세요
부록 3 부산·울산·경남 인권침해 및 성폭력 관련 지원단체 및 기관	81쪽으로 가세요

📍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기계기술연구동 405호 <http://equality.pusan.ac.kr>
 인권상담실 : 051-510-7942 humanrights@pusan.ac.kr
 성평등상담실 : 051-510-7890 safety@pusan.ac.kr

기계기술연구동

208



인권센터는 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한 부산대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나의 인권과 성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안내자가 되어줄 Guide Book을 발간합니다.
 당신의 인권과 성인권이 침해된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때, Open this Guide Book~



Guide 1.

천천히 순서에 따라 읽어 보세요. 친구들과 토론해보세요.

- 예방과 대처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대처하고 치유할지 알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피해를 겪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uide 2.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를 찾아보세요.

- 학내 신고절차를 알고 싶다면? → 26쪽으로 가세요.
- 학내에서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 28쪽으로 가세요.
- 법률 도움을 받고 싶다면? → 28쪽, 77쪽으로 가세요.
- 피해 이후, 뭘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 34쪽으로 가세요.
-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 40쪽으로 가세요.
- 형사고소 절차를 알고 싶다면? → 41쪽으로 가세요.
- 역고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 45쪽으로 가세요.
- 사건 해결과정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 49쪽으로 가세요.
-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면? → 51쪽으로 가세요.
-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 53쪽으로 가세요.
-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상담자를 만나야할지 고민된다면?
→ 54쪽으로 가세요.
- 사건이 자꾸 떠오르고 내 잘못된 것 같다면? → 55쪽으로 가세요.
- 신고하고 싶은데 내 신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 75쪽으로 가세요.
-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경우에? → 77쪽으로 가세요.
-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 의료비가 없다면? → 78쪽으로 가세요.

Guide 3.

이 책의 내용으로 충분치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인권센터로 전화주세요.

Guide 4.

이 책은 참조사항임을 잊지 마세요.

만약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원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정확한 상담과 정보를 얻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쑥~
인권 들어갑니다!

인권이란?

인간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개인의 정체성 및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른 차별됨 없이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2015), 『인권첫걸음』).

대학 인권이란 “대학이라는 교육공간에서 어떤 구성원이 제도상의 결함 혹은 위배, 그리고 타 구성원(들)의 언행이나 조치로 인해 피해, 차별, 모욕, 불이익, 부당함을 경험하거나 인격침해를 받았다고 인식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통칭하는 관행적 용어”라고 넓게 부를 수 있습니다(조효제(2015), 『인권오딧세이』).

-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 제 3조(정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학에서 인권 침해? 이럴 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권 침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차별에 의해 자신의 삶의 가능성보다 축소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일들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정도에 따라 그 세부적인 구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인권침해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학생의 경우, 2016년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음주강요 > 막말, 폭언, 모욕적 발언 > 단체기합 > 폭력 및 구타 > 집단따돌림 > 인권침해 발생 시 회유 혹은 묵인 > 강제적 행사 참여 및 노동 강요 > 위협적인 강제 집합 > 회비 강제 징수 혹은 강매 >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 복장, 용모, 행동을 제한하는 자체규율 > 교수의 잦은 수업변경(시간, 장소)과 일방적인 수업진행방식 순으로 인권침해사례를 꼽았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2012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에서 “출장 간 교수님 빈집 가서 밥을 줬다.” “이삿짐 나르고, 교수 아들 생일파티 때 풍선 불고, 교수 아내 비행기 표도 예매해줬다.” “실험실에 하루 12시간은 있었는데 처음엔 장학금만 받고 월급이 없었다. 박사 진학하고 생활비 구할 길이 없어 얘기하자 월 40만원씩 받게 됐다” “중요한 학회지는 교수가 직접 쓰지만 ‘연구실적 채우기’용일 때는 조교들에게 주제와 분량을 정해주고 대필시키기도 한다.” 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 제도가 불공정하게 선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사례집을 살펴보면, 건학이념과 관련이 없는 학문 분야의 교수 채용 시 그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경우, 교원 파면 문서를 공개 문서로 공람한 행위, 60세 이상의 교수들에게 총장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구두로 채용되어 수업 시간과 요일까지 배정받았는데 학력을 이유로 계약철회를 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총장에게 사전 허가받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조교의 경우, 언론을 통해 2015년 교수가 제자인 조교에게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화상을 입히는 등 폭력을 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인분을 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모 대학에서는 교수가 8만장 분량의 논문을 스캔하게 시킨 사실이 알려져 ‘스캔 노예’ 논란이 일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노동권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평등권이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11조 1항).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제정규정 제3조 4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

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

※ 단, 정당한 목적이 있고 비례성의 원칙에 합치할 경우, 법률이 보호하는 특정 속성에 기반하여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84).

평등권 침해 상황의 예)

- 입학사정에서, 남자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기 적절치 않다고 여겨, 아동학과에 지원한 남학생을 탈락시켰다.
- 신규 임용 과정에서, 종교가 이슬람교인 지원자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인터뷰 심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 선발하지 않았다.
-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 때문에 학과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했다.
- 직원에게 주어지는 연수 기회에 나이가 많은 직원은 관심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 기회를 더 젊은 직원에게 주었다.
- 직원이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작업 위치를 발가락으로 알려주거나, 작업위치에서 비켜주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대자보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확산하였다.

▶ 인격권이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8조)
- 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격권은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 인격의 왜곡·변형을 받지 않을 권리로 구성된다. (김학성 (2007), 『헌법학강의』, 강원대학교 출판부)
- 사죄광고로 인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된다면 인격권침해라고 하면서, 사실상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헌결 1991.4.1. 89헌마160).

인격권 침해 상황의 예)

- 수업 중 교수가 학생들에게 욕설 사용 및 죽비를 사용해서 체벌을 가하였다.
-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출산 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2~3명을 출산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계획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였다.
- 징계 처벌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특정인을 알 수도 있는 정보와 더불어 “흡연”, “비상문 개방”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공고함으로써, 개인의 평판이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

-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수업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는 등, 수업과 무관하게 학생의 장애 등을 공개하였다.

▶ 학습권이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침해 상황의 예)

- 수업 시 집중하지 않고,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 체력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팔 벌려 뛰기”, “어깨 동무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하도록 하였다.
- 학업과 상관없이 교수나 선배가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 요청을 하였다.
- 장애를 가진 학생의 수업 및 교내 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학내 건물의 승강기 및 경사로,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 난독증이나 시각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강의안을 전자문서로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녹음을 허용하지 않았다.

▶ 노동권이란?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32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노동권 침해 상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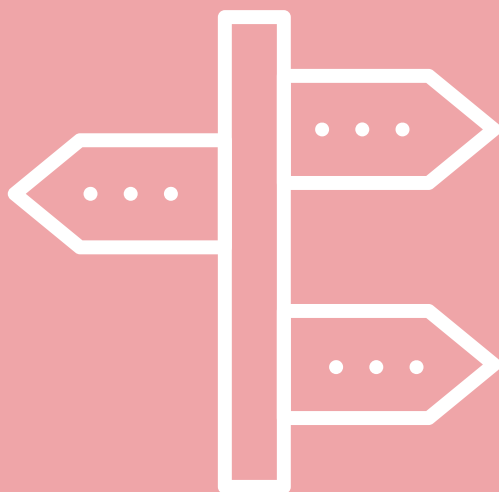
- 하루 6~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한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비 또는 장학금으로 대체하며, 4대 보험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
-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장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배제하였다.
- 연차 휴가 중인 노동자에게 해외 여행 시 승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여 노동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막았다.



우리에게는 이를 불일 수 없는 솔한 인권이 있으며,
또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
또는 정당한 자신의 인권을 찾고 싶을 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쌩~ 성폭력 알아봅시다!



대학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로 일반적으로 강간,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관련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형법 등 법률에서 다루는 성폭력(범죄)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성적 목적으로 한 침입 행위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입니다.

대학은 대학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내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 및 보호, 징계를 해야 하는 공동체사회입니다. 법률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한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학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부산대학교 성폭력 규제 학칙

부산대학교는 1998년 9월 전국 대학에서는 최초로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교내에서는 학칙 제정 전 학생생활연구소 내 성폭력상담실을 마련하여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시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95년부터 학내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해왔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97년 학생 대상 성폭력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학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인권센터로 전환하여 현재 인권센터 내 성평등상담실과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구분	정 의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들
신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면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인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성적 농담이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딱 붙는 옷을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00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술집여자같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우리는 여직원들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같 필요가 없어” “우리 00씨~ 우리 예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성적인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 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행위
기 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불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직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상 불이익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여성가족부(2018),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일부 수정, 발췌)

▶ 강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 등.

▶ 성추행(강제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성적 동기나 목적 없이도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욕은 목욕탕) 또는 발한실, 모욕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최근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는 ‘둘만의 특별함’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폐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약자는 폭력 상황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고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밀함과 유대관계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즉각 폭력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입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물리적 폭력, 감정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등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디지털 성폭력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등의 불법행위입니다.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¹⁾가 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몰카’나 ‘도촬’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으나, 범죄를 희석시킬 수 있어서 2017년 9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촬영’이란 용어 사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촬영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유포	성적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재유포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는 행위 / 금전적 수익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
유포협박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다른 연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앱 통해 성행위촬영물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소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디지털공간 성적괴롭힘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피해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 내용의 글을 게시 / 게임 내 성희롱 / 단독방 내 성희롱

1) 신고받은 형벌의 수위에 따라 차등하여 10년부터 30년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신체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된 정보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루밍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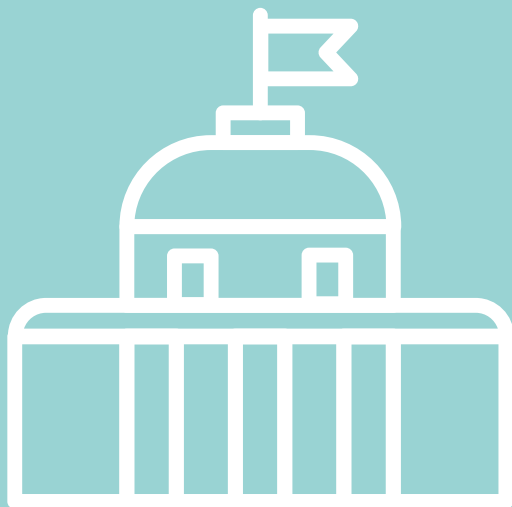
그루밍(Grooming)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경험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등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쉽게 성적 학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데, 이 모든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착취할 대상을 선택한 뒤, 오랜 기간 친절하게 대해주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되는데,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그루밍을 거처며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 이 규정 제3조에서 성희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 조항을 보면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이 규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쓱쓱~ 인권센터 들어갑니다



인권센터 Q & A²⁾

✔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상담을 하나요?

모든 구성원들은 인권·성평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성평등 역량을 스스로 향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누구나 인권센터에 인권·성평등에 관해 문의하여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성평등 고충을 상담하여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과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피해를 겪은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피해를 겪은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한 쪽만 우리 대학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부산대학교 학내 구성원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교 구성원”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 당시에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학내 구성원이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 피해자, 생존자, 피해경험자 등의 용어 중 Q & A에서는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 명시된 피해자 용어를 사용.”

✔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사유 발생 당시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부산대학교 구성원이었던 사건은 본 센터의 처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사건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게시된 글을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대학의 다른 구성원이나 기관에 신고된 사건 및 온·오프라인 게시판 등에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게시된 경우에는 센터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때에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피신고인의 부재 등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신고인의 부재 등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일방 당사자와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인권센터는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조치를 위해 5인 이내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건당사자와 친인척이거나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

원이 될 수 없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의 사람(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위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비밀유지의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건당사자는 위원의 배척을 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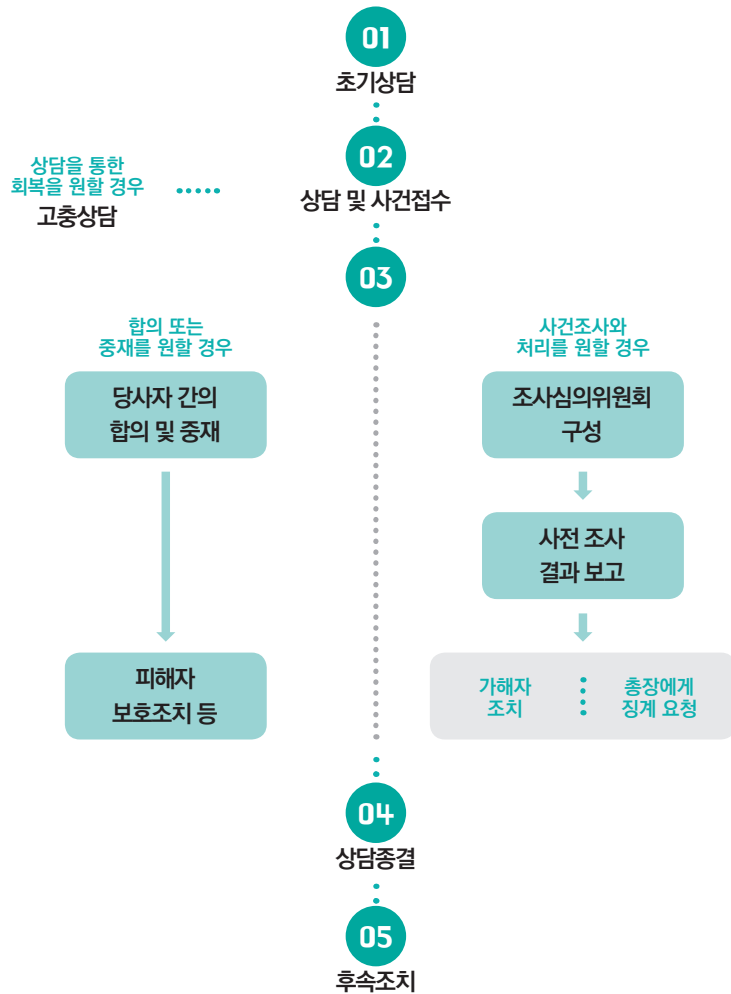
✔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인권센터는 어떤 보호 조치를 하나요?

- 조사 전후 이동시 당사자 간 분리가 유지되도록 동선을 관리합니다.
- 피해자가 안전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 진술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 조사과정 중 피해자를 의심, 부인, 비난, 협박,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매 조사 시작 시 고지합니다.
- 피해자는 조사과정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조사심의위원회에 특정인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의 부재 등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신고인의 부재 등으로 사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일방 당사자와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연속해서 2회 응하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 신고 이후 혹시 피신고인이 찾아오거나 괴롭히지는 않을까요?

인권센터는 피신고인 면담 시 가해행위의 중단 뿐 아니라 신고인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피해자나 신고인 등에게 연락이나 접촉하지 말 것, 그리고 비밀 유지에 대해 고지함

니다. 이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인 동시에 사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피신고인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에 대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이 교수나 강사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강의 정지를 요청하여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상담원이 통보합니다.

✓ 인권센터에서는 비밀 유지나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인권센터규정에 의해 사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는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을 문서로 서약하며, 모든 서류에 이름이 아닌 가, 나, 다 또는 A, B, C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가해자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나요?

신고인이 중재를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판단에 대해 이견이 있고 합의를 원치 않거나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센터장은 총장에게 징계요청을 하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 등이 있으며, 교원 및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당사자는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당사자는 인권센터에 사전 통지 후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당사자들과 조율하여 조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 전후 이동시 사건당사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고려합니다.

✔ 인권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혼자서 고민하며 단절감과 고립감을 가지기 쉬운 피해자 등 신고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학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심리상담이 가능하며 신고인과의 합의나 학내 조치의 일환으로 교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학교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 사건당사자가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학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인권센터는 사건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아래 학내 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효원상담원** : 인권센터에서 피해자(간접피해 포함) 상담 후 심리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효원상담원과 연계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51)510-3707, 7834, 7639, 문창회관 2층.
- **학교변호사** : 법률상담 및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1)510-1128
- **보건진료소** : 인권센터에서 피해자(간접피해 포함) 상담 후 정신과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를 원할 경우 보건진료소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051)510-1278, 상담가능시간: 목요일 14:00 ~ 18:00, 문창회관 1층 건강증진실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의 학습권, 평등권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51)510-3577, 성학관 203호
- **유학생지원센터** :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51)510-3873
- **총학생회** : 학생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051)510-1925, 문창회관 3층
- **동아리연합회** : 인권 및 성평등 관련 동아리들이 참여합니다.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 학내 비정규교수들의 노동권, 평등권 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1)510-7337, 정보전산원 309호

사건관련자 :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자, 가해행위자, 참고인

- **피해자**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 **가해자**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가한 사람
- **참고인** :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조력할 수 있는 사람
- 조사심의위원회 사실 인정 전까지는 신고인, 피신고인으로, 인정 이후에는 피해자, 가해자로 호명.

신고 : 학내 기구에 사건접수신청서 또는 신고서 양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하거나 문서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자 참관 하에 구술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인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었거나 사건을 인지하여 학내 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겪었거나 인지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신고 동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신고인 :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가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학내 상담실에 신고된 사람입니다. 신고된 사건 내용에 대해 학내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및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해결로 그치지 않고 학내 조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당사자 :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말합니다.

참고인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한 사람입니다. 신고인은 신고 접수 시 참고인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재 : 피해자의 결정에 따라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내 기구가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사건당사자간의 동의 하에 합의하고 학내 기구가 수행 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단, 사건의 심각성이 그리 크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교육 이수 등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사심의위원회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쩌라Go? 이렇게 Going!

나의 인권과 성민권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에 의해

우리의 인권과 성민권은 침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치유와 성장’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가해자를 혼내거나,

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그 모든 것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곁에 인권센터가 함께 합니다.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당신과 함께 합니다.

어쩌라Go? 사건에 잘 대처하기!

치유는 몸과 마음의 안정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는 당신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내가 경험한 일이 내가 이해될 수 있게 정리되고, 내 마음과 삶을 회복하
고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 시작은 그 일을 겪은 ‘나’를 살피고
돌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부터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출혈이나 외상이 있나요?
- 잠을 잘 못자거나 악몽을 꾸나요?
-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고 토하는 등 소화기능에 장애가 있나요?
- 두통이 있거나 근육 경련이 있나요?
- 성기가 가렵거나 쓰러기도 한가요?
- 그 외 다른 신체적 증상이 있나요?

☑ 나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나요?
- 수업에 자주 지각하거나 집중하기 어렵나요?
-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하고 있나요?
- 친구, 선배 또는 가족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 심리적으로 나는 어떠한가요?

- 자주 불안감이 올라오나요?
- 감정 변화가 심한가요?
-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거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기도 하나요?
- 생각해보면 큰 일이 아닌데 참을 수 없이 화가 올라오기도 하나요?
- 눈물이 많아졌거나 엉뚱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도 하나요?
- 사건 장면이 계속 또는 불쑥 떠오르나요?

나는 지금 -----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잊거나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 자신의 마음과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회복과 치유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 몸과 마음에 여러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출혈이나 외상이 있다면 관련 전문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해결을 할 때 도움이 되므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어떤 피해로 왔는지를 알리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촬영해 둡니다. 산부인과 증거 채취는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간 피해를 겪었다면 병원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암을 발병시킨다는 연구도 있으나, 혹시나 임신으로 인해 수술하거나 출산까지 이르면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자 우리 몸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이후의 심리적 반응들은 정상적인 반응이니 너무 놀라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후 형사나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으세요.
- 병원 치료비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의 경우는 지역별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폭행 등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부록 1 참조).

☑ 증거물이 있다면 이렇게 보관하세요.

증거가 될 만한 옷 등은 습기가 차지 않게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담거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고 촬영해 둡니다. SNS 등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캡처하거나 저장해둡니다. 분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USB와 내게 쓴 편지함 또는 클라우드 등에 이중 저장해 둡니다.

☑ 피해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가해자에게 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힘들지만,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가해행위자가 한 말이나 행동, 인상착의나 신체특징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 나의 피해상황과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을 알아보세요.

성폭력 관련 법률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내 규정을 알아보려면 부산대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행정서비스-규정집-총장직할지원부속 시설-지침)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로 인한 피해들을 떠올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고,
그러다가 내가 소진될까,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 아래를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나의 피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원하는 것의 목록을 기록해봅니다. 병원 치료? 상담? 법적 지원? 정보? 법적 처벌? 가해행위자와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것? 피해 보상? 가해행위자 징계? 등등. 원하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적어본 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 나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 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 나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 나는 가해행위자를 처벌하고 싶다.
- 나는 가해행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 나는 사람들에게 가해행위자가 한 일을 알리고 싶다.
- 나는 가해행위자와 같은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 나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
- 나는 학교에서 가해행위자를 대면하고 싶지 않다.
- 나는 학교에서 가해행위자에게 징계를 내리길 원한다.
- 나는 가해행위자에게 사과 받고 싶다.
- 나는 가족, 친구, 애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한다.
- 나는 _____를 원한다.

나의 '원함'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진행해나가는 것에서 걱정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가해행위자와 나와의 관계가 걱정될 수도 있고 도리어 나를 비난하거나 보복하거나 위협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사람의 시선이나 소문이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시간과 돈, 체력이 모자랄까봐, 돈 때문이라고 오해받을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요인부터 지워 나가고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남겨 원하는 해결을 연결하여 생각해봅니다.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것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해요인이 있어도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가해행위자와의 관계가 걱정되나요?
- 혹시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될까봐 걱정이 되나요?
-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운가요?
-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나요?
- 증거가 없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나요?
-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걱정이 되나요?
- 혼자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한가요?

나를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아 보세요!

위의 과정을 해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찾아 도움을 얻으세요. 방해 요인들을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나 선후배, 동료 등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 친구이거나 동료가 피해를 경험했다면,

고통에 함께 하며 슬픔을 느껴주세요. 회복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한 달 또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치유하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귀 기울여 주세요. 스스로 말을 걸도록 격려해주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배출구를 찾도록 권해주세요.

또한 도움을 줄 만한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을 찾아보세요(부록 1, 2 참조).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결정해보세요. 사건 해결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나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보세요!

가해행위자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사법 절차나 학교를 통한 제도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꼭 하고 싶은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남기세요.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학교 내에서는 해결절차를 밟지 않기를 결정하더라도 스스로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 해결 방안으로는 가해자 연락이나 접근 금지하기, 이사나 전근, 전학 요구하기, 소문 내지 못하게 하기, 사과문 받기, 관련 사진이나 자료 파기하기, 가해자 교육이나 사회봉사 이수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는 가해자에게 학내 징계나 형사적 조치, 민사적 조치를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형사적 조치는 벌금,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이며, 민사적 조치는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효과가 있을지, 나를 위협하거나 걸리는 게 있는지, 주변이나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지금의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해나가

야 합니다. 결정되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써보세요. 증거 수집이나 요구사항 정리, 변호사 상담 등 실행 방법을 찾습니다.

▶ 피해경험자²⁾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들

무대응	그냥 참고 넘김
자조 활동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음 ⇒ 치유상담, 심신수련 등의 활동 ⇒ 심신 안정, 일상 회복
행위자와 개인적 대응	피해자 요구안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결정 ⇒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행위자에게 요구 전달 ⇒ 행위자가 수용 ⇒ 요구안 이행 모니터링 ⇒ 행위자 수용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방안 모색
소속단위 집단의 대응	피해자 요구안 정리 검토 ⇒ 지지집단의 자원, 성격, 영향력 검토 ⇒ 기존집단 또는 새로운 집단 이용 ⇒ 피해자 지지집단 혹은 공신력을 갖춘 집단 ⇒ 행위자 또는 소속집단에 요구 전달, 소속집단 문화 개선
학교의 제도적 대응	상담 통해 상담기구 개입 하에 당사자 간 합의 중재 해결 신고 접수하여 조사처리 : 심의위원회 개입 하에 당사자간 합의조정 해결 :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피해경험자 보호조치와 가해행위 징계발의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의결 : 징계요구에 따른 해당 징계위원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제재
교외기관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타 관련 기관에 진정
사법적 대응	형사 고소 또는 고발 민사소송, 행정소송 ⇒ 수사절차(경/검찰) ⇒ 공판절차(법원)

한국성폭력상담협의회(2018),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2) “성폭력피해경험자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싶다. 피해 경험 해석의 주체성과 통제력을 당사자인 경험자에게 주자는 의도이다. 성폭력은 나쁜 경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내는냐는 과정은 가부장제 사회가 정의하는 성폭력 피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의 선택에 있음을 지지하자는 것이다.”(2016.8.14. 김민예숙의 마음의 집, 한겨레신문)

사건에 대해 무대응할 때, 자조활동을 할 때, 행위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응할 때, 학내기구를 통해 해결할 때, 형사 고소할 때, 그 외 대응을 할 때 각각 장점과 단점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봅니다. 생각으로만 정리하는 것 보다, 글로 적어보면 더 분명해지고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증인을 확보합니다. 현행법 상 내가 참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가해행위자 만나기 : 가해자의 변명, 거짓말에 대응할 만한 증거나 기억을 미리 정리합니다. 가해행위자가 시인하는 내용이나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말을 수집합니다.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 도움 줄 만한 사람과 동석하거나 근처에 있도록 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구 사항을 전달합니다.
- 가해행위자가 회피하거나 가해행위자를 만나기 싫다면, 전화나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인터넷 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24시간 신청.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음.

*** 우체국 방문** : A4용지 한 면만을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함. 작성 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알아볼 수 있게 남겨두어야 하며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함. 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 2부를 복사한 후(매수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 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

사과문 작성하기

가해행위자의 사과문에는 가해행위에 대한 인정, 피해경험자의 요구사항 이행방법,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하기

합의서는 피해경험자와 가해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사실, 피해경험자 요구사항, 요구 불이행시 조치사항, 날짜 등을 적고 쌍방이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고, 가해행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해행위자가 피해보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증 받은 합의서로 집행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합의서 공증 시에는 집행 가능한 공증을 해야 함.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한 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 채무자에 대한 공증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가능. 공증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함.

▶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가해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시 증거와 증인 확보 유무가 중요하며, 법적 처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조사에서 사건을 다시 상기해야 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번 출석할 수도 있는 점, 가해행위자와 대질 신문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수사나 공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과 고소 이후 가해행위자 측에서 합의 종용 등 괴롭힐 수도 있는 점, 경·검찰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법원 서류 송달 등으로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및 고소인 조사

- 고소장 제출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합니다.
-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 조사 시, 신뢰 관계있는 사람의 동석이나 대질신문에 대한 의견, 장소 등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전달받도록 합니다.

▶ 성폭력사건의 경우

- 한 번의 조사로 끝낼 수 있도록 사건과 관계된 내용을 최대한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비디오 진술 녹화를 요청합니다.
-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경찰에 진술만으로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불기소될 경우, 고소한 사건에 한해 항고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이 유리합니다.
- 경찰에 성폭력피해자 국선번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록 2 참조).
- 인적사항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가명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록 2 참조).

참고인 조사

- 주변 사람 중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할 내용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고인은 사건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 외에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피의자, 가해행위자) 조사

- 대질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뢰 관계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동석과 가해자로부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 경찰은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송치할 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 **기소의견 송치** : 경찰에서 유죄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하는 것으로 기소의견이라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불기소의견 송치** : 경찰에서 범죄혐의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검찰에 사건송치

검찰 수사

-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참고인, 피해경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 대질신문도 가능하며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응합니다.
- 검사에게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증거가 있으면 탄원서 등 별도로 제출 가능합니다. 처벌의 여부나 정도, 구속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수사기간** : 보통 경찰의 수사기간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2개월 이상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기간은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권고적인 규정이고 사건에 따라 조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소(불기소→ 항고 → 재항고)

-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30일 이내, 추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항고도 기각될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0일 이내).
- 재항고 기각 시,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공판) / 약식명령(구약식)

- 공판 : 공개적으로 열리는 재판. 인정신문, 모두진술,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심, 선고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성폭력사건 : 피해경험자는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하거나, 자신이 출석하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 시 신뢰 관계 있는 사람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구약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리가 된 후에는 이의제기 할 수 없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그 이전에 정식 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의자(가해자)는 피고인이라 칭함.

* 증인 출석 시,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증인 진술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록 2 참조).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 1심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에게 항소 요청(7일 이내).
- 3심은 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므로 피해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공소시효** :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미성년자일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10년 연장이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등의 성범죄, 강간살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단, 2013.6.19. 법 개정 이후 사건에 적용).

▶▶▶ 역고소 대응하기

역고소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이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 또는 검사에 의한 무고, 명예훼손, 위증, 협박, 모욕, 공갈, 강요죄,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역소를 합니다. 최근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할 때는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확보** : 녹음·캡처·기록의 생활화 / 물리적 폭력이나 강간의 경우 각종 진료 및 상담기록, 증거물 등 확보 / 카드내역 및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이메일·채팅 내역 등 사건 정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물적·인적 증거 확보

· **법률상담** : 신고 전 단계부터 법률 상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조력받는 것이 필요.

· **수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대응하기** : 수사관의 편견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

-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불편함을 유발하는 말이나 비난조의 질문을 받았나요?

- 평소의 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 이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나요?

- 피해자가 충분히 반항했는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 차례 질문했나요?

- 증거물을 검토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했나요?

-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위압적인 수사를 했나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나요?

- 미리 조치를 부탁했는데도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았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무고로 기소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았나요?

·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기** : 기억나는 것에 대해 최초 진술부터 핵심내용만 변함없이 진술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 조사에 일희일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권리 관련한 제도 활용하기**

수사·재판 단계	·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 ·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제도) ·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 · 처분결과를 알 권리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 진술할 권리 ·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재판 이후 단계	· 선고 결과를 알 권리 ·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2019), 『성폭력 역고소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민사 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행위자가 공무원이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행위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송을 알게 된 가해행위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를 막기 위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산상 손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소요될 치료비나 후유증(신체장애)가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경험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단체) 등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추가 조사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피해 당사자와 제3자)는 사업주의 성희롱 사건조사 의무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배치전환 등의 인사상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내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학내 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원을 통해 교내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신고, 접수 이후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중재와 심사위원회 소집에 의한 조사와 징계요청의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당사자(피해경험자, 가해행위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 관련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학내 구성원인 경우나 피해경험자 혹은 가해행위자로서 관련된 사건이면 모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정규직원, 직고용 직원이 아니더라도 시간강사, 파견 직원, 대학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 휴학생, 논문 제출 예정자 등 모든 구성원이 해당합니다.

해결의 한계점도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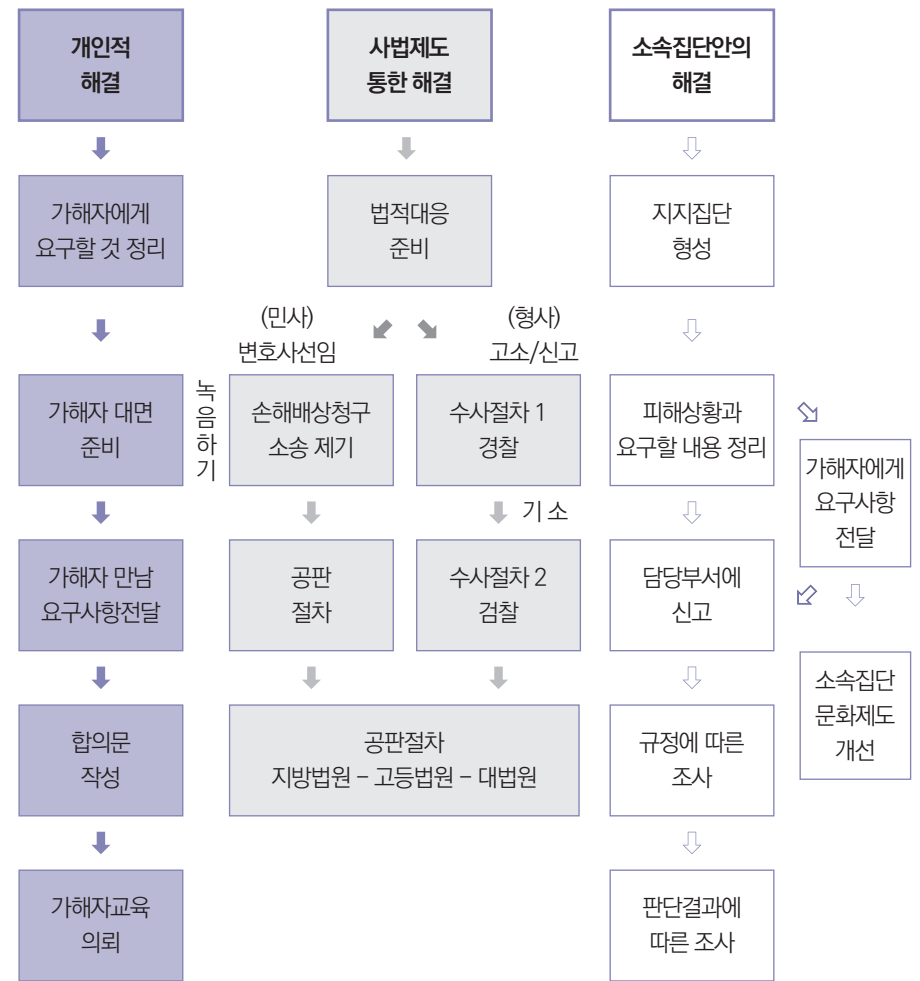
원하는 대로 목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또는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조건 등으로 인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한계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행법이나 학내 규정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돈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지, 나의 학업이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선 안 되는 상황인지,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면 곤란해서 혼자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사건 해결에 집중할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등 외부적 한계와 내부적 한계를 모두 생각해봅니다. 미리 한계를 설정하여 내가 감수하거나 포기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건 해결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작성한 무대응 할 때, 자조 활동을 할 때, 행위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응할 때, 학내기구를 통해 해결할 때, 형사 고소할 때, 그 외 대응을 할 때의 장단점 기록, 원하는 목표 기록, 한계점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지자들의 조언도 떠올려 보세요. 좀 더 잘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온전한 자신의 결정임을 믿으세요.

“...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강간을 겪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잡아 두게 될지도 모르는 행태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내버려 두는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테레사 라우어(2010), 『그녀의 불편한 진실』

▶ 인권 및 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기타권리 구제제도	성희롱·성차별 사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한 해결방법도 있음	합 의	사법적, 제도적 해결 도중에도 합의할 수 있음. 단, 장단점을 비교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
--------------	--	-----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내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거나 또는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치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잘 이겨 나왔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지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또는 자신이 전처럼 다시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며 누구나 치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결코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를 치유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야.
- ☐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할까?
- ☐ 그때 일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해. 어떻게 하지?
- ☐ 일상의 작은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하면 끝없이 나올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을까?
- ☐ 세상에 내 편이 있을까? 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 ☐ 결국 나 밖에 없어. 아무도 날 몰라. 친구도 부모도 사회도 믿을 수 없어.
- ☐ 지금은 힘들지만 에너지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 ☐ 다른 사람이 가해자에게 대신 복수해줬으면 좋겠어. 친구가, 법이, 징계위원회가 나를 대변해주면 좋겠어.
- ☐ 결국 나의 숙제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거야.
- ☐ 그렇게 커 보이기만 하던 가해자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 ☐ 나와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

4) 아주 특별한 용기(엘렌 베스·로라 데이비스, 동녘) 내용 일부를 발췌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경험자의 치유에 대한 책이지만, 다른 인권 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겠어.
- ☐ 세상을 조금씩 바꾸나갈 거야.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
(너 아니면 나 :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셀프 치료 가이드, 정희운, 이매진)

치유를 위한 생존기술을 익히자!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 **자신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보세요 :** 누구와 매일, 매주, 매월 만나서 상호작용하는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감정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지. 치유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피해에 대해 말은 못했지만 속 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 **지지망을 발전시켜보세요 :** 지지망은 당신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며 물질적, 지적, 정서적, 정신적 지지를 해줍니다.
-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배워요 :** 지지망은 당신이 그것을 활용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기가 주저된다면, 당신 입장에 있는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이 나서서 도움을 줄 것인지 생각하세요.
- **절망에 빠졌을 때 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 절망 상태에서는 창의적이거나 선명한 사고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시간에 목록을 만들어 순서에 따라서 해보세요.
 - 숨을 쉬어라.
 - 주변을 돌아보라.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
 - 지지망에 속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계속 전화하라.
 -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어루만져라.
 - 뜨거운 목욕을 하라.
 - 명상하라.
 - 청소 등 몸으로 하는 일을 하라.

- 동네를 세 바퀴 뛰어라.
- 마음을 달래는 음악을 들어라.
- 기도하라.
- 일기를 쓰라.
- 그림을 그리고 진흙으로 놀고 콜라주를 만들라.
- 집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안전한 뭔가를 하라.
- 내 베개에 대고 소리 질러라.
- 오래된 영화를 보거나 미스터리 소설을 읽어라.
- 몸에 좋고 담백한 음식을 먹어라.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 **자기 돌보기를 해봐요** :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기 돌봄은 치유의 핵심입니다. 일상 속에서 위안을 주고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치유를 더욱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모두 적어 봐요.

“생선초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가 초밥을 사먹죠.”

“영화를 좋아하고 책 사는 것을 좋아해요.”

“주말이 되면 맘에 드는 곳으로 좀 멀리 가요.”

“주중에 시간을 비워놔요. 집으로 오지만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해요. 아니면 친구와 외출하는데 미리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뜨거운 욕조 목욕을 해요.”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방 곳곳에 자기 확인 메시지를 적어놓았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죠. ‘나는 상처입어도 썩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난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참아줄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용서한다.’”

“어려운 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는 늘, 아무리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나 자신에게 꽃을 선사합니다.”

“아침을 잘 차려서 먹습니다. 음식으로 나를 잘 돌보려고 애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글을 씁니다.”

“아주 화려하고 찰랑거리는 옷을 입어요. 작년에 무척 멋지고 고급스러운 에머랄드 초록색 옷을 샀어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근사하게 보여요. 정말 나에게 멋진 선물이 되었지요. 단지 세일이어서 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좋은 계기였어요.”

“할 수 있을 때마다 자연으로 갑니다. 걷고 하이킹하고 스키도 탑니다.”

▶ 자살하지 말라

당신이 자살하고 싶거나 자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면 즉시 도움을 구하라.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유능한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살방지 핫라인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치료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보관해두라. 그래야 당신이 몹시 힘든 상황에서 서도 그 전화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

상담원과 자살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계약 조건을 함께 만들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각인시켜서 당신이 의탁할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일정 시간동안 안전하게 있지 못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고 자살방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치료사의 전화를 받기 전에 다른 도움을 받겠다고 동의한다. 이런 합의를 한다면 당신 둘 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감정이 지나가리라는 것이다. 그 감정들 때문에 당신이 소진되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자해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참을 수 있을 때마다,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하고 고통을 헤쳐 나가며 자신과 친해질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투사의 정신을 쌓아가게 된다. 당신은 가해자들이 세뇌시킨 기억들에 맞서 싸우고 마침내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그것들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spc@spckorea.or.kr

• 자살 및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센터 <http://suicide.busaninmaum.com>

내 이야기를 들어줄 든든한 지지자를 찾으세요.

학내 인권 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또는 심리 상담 센터 등 사건으로 인해 드는 모든 생각들을 털어 놓고 이야기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숙련된 상담원의 지지는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적절한 상담원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추천, 전화조사를 통해 가장 마음에 드는 두세 명을 만나보고 상담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당신의 삶의 전문가이며, 상담원은 상담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상담은 그러한 상담원과 내담자의 협동에서 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상담원을 선택할 때의 가이드 라인

- 당신의 경험이나 고통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 치유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가해행위자가 아닌 당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 당신의 역사를 규정하지 않고 그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 가해행위자와의 화해나 용서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 상담이 아닌 공간에서 당신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사적 문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금이나 앞으로 당신과 성적 관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 당신의 모든 감정(슬픔, 분노, 격분, 절망, 기쁨)을 존중해야 합니다.
-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 상담 이외 다른 지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당신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 스스로를 돌볼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상담원과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꺼이 토론하여야 합니다.
- 자신이 행한 실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내담자로서 당신의 권리

- 상담자에게 바라는 상담의 질을 미리 밝힐 수 있는 권리
- 존중받을 권리
- 상담자가 하는 어떠한 제안도 거절할 권리

- 당신이 바라는 서비스에 만족할 권리
-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원과 자유롭게 토론할 권리
-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담관계를 끝낼 권리

☑ 효과적인 상담

- 당신이 이해받고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한 순간에 든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이 늘 위안을 주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고착되어 온 자기 고유의 방식을 인식하고 자기 감정을 느끼면서 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 초기에는 상담원에게 의존하더라도 점차 당신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상담관계에 당신의 모든 힘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삶과 치유의 중심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상담원은 당신이 활용하게 될 많은 자원 중 하나입니다.

☑ 지지집단 만나기

다른 피해경험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욕감과 고립감, 은폐, 자존감 등을 다루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고통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결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당신 역시 그들과 비슷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확고한 자세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 또 다른 방법

예술이나 음악, 글쓰기, 야외활동, 영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며, 친구, 파트너, 가족, 다른 피해경험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멈춰 서 있던 나를 현재로 데려오세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한다면, 무의식의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사건을 돌아보고 지금부터는 행복해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억을 복원하고 무엇이 날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주변 환경과 내 속에서 더해진 감정과 생각 속에서 어떻게

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치유의 걸림돌 '통념'

•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태도가 모호했어,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어 라고,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 가해행위자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한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 내가 나를 지키지 못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저리 가라고 소리치는 것은 생각으로는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폭력인지 알아차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대처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상대와 나의 권력 차이가 클수록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아닌 지금 상태의 나로 그때의 대처에 대해 판단하지 마세요.

•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인격이 무시되고 내 의지가 좌절되고 몸과 마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몹시 힘들지만, 가해행위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나는 변함없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분노는 '내 자신'이 아니라 가해행위자에게 표출되어야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감정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가해행위자가 마냥 밉기만 하고 화가 나기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폭력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결같은 거라고 하는 '항상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나와 친밀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해행위자에게 여러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성폭력 피해 당시 신체적으로 반응한 내가 혐오스러워요.

성관계할 마음이 들어야만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 중의 하나입니다.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물리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액이 분비되거나 남성의 경우 발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극에 반응하든 안하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자극은 폭력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입니다.

• 실제로 별거 아닌 사건인데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요?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에 비해 나의 사건은 별 것 아닌 일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심리적 외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와 무관하게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힘들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철학, 심리학, 예술 등등 많은 것들을 동원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 사건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잃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일어난 부정적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경험한 폭력을 끄집어 내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나의 변화를 바라봐 주세요.

많은 피해경험자들이 사건의 원인이나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체하거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늘 긴장되고 온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 등 섭식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알코올이나 약물 등에 중독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거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에게 대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몸, 감정, 관계 등 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화가 나고 편안하지 등 등 자신에게서 시작하세요.

- **감정 변화** : 분명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심장이 오그라들 듯 조여 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쇼크 상태에서 빠져 나오려는 반응입니다.
- **신체 기능 저하** : 입맛이 떨어지고 울렁증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감기처럼 면역력과 관련 있는 질병을 앓을 수도 있으며, 성과 관련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 **장면 재현** : 플래시 백. 사건과 관련한 장면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비슷한 곳을 지나칠 때나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을 본다면 더 뚜렷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 **우울증** : 여러 증상이 주는 괴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자신감 상실, 의욕 상실, 폭식이나 거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자신감 상실과 자기 혐오** : 그런 상황에 낡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혐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포증** :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공포가 찾아오기도 하며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에 두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위험한 곳을 혼자 찾아가 자신이 관촬음을 확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대로 표출하지 않을 때 더욱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배려, 희생 등 나 자신보다 타인에게 초점을 두도록 요구

받기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경험하고도 속으로만 참다가 좌절감을 느끼고 한 번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나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분노’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원한이나 미움, 보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분노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들어있고, 가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요구는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분노 표출 방법을 찾으세요. 자신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들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방법으로 고통이 줄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 연장을 가거나 상담을 받거나, 자신만의 표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 숨 고르기!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 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핸터 월슨 스미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순순히 작별 인사 하지 마세요
늙은이도 하루가 끝날 때 뜨겁게 몸부림치고 소리쳐야 합니다
빛의 소멸에 맞서 분노, 분노하십시오

현명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때 어둠을 당연히 받아들일지언정,
자신의 말들이 번개를 갈라지게 하지 못했기에,
그냥 순순히 작별 인사하지 않지요.

착한 사람들은 마지막 파도가 지나간 뒤 울부짖습니다
푸른 해변에서 춤추지 못했던 나약한 행적을 후회하며,
빛의 소멸에 대항해 분노, 분노합니다.

날아가는 태양을 붙잡고 노래했던 사나운 사람들도
해가 이미 지나갔음을 뒤늦게 알고
그냥 순순히 작별인사하지 않지요.

심각한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 희미해진 눈으로
꺼져가는 눈도 별뿔뿔처럼 빛나고 즐거울 수 있음을 깨닫고
빛의 소멸에 대항해 분노, 분노합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아버지여, 그 슬픔의 높이로,
당신의 격렬한 눈물로 제발 나를 저주하고, 축복하시기를.
그냥 순순히 작별인사 하지 마세요.
빛의 소멸에 대항해 분노, 분노하십시오.

- 딜런 토마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뜨거운
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
혼자라는 건
설비집 식탁에 둘러앉은 굶주린 사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식사를 끝내는 것만큼
힘든 노동이라는 걸

고개 숙이고
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
들키지 않게 고독을 넘기는 법을
소리를 내면 안돼
수저를 떨어뜨려도 안돼

서둘러
순대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
허기질수록 달래가며 삼켜야 한다는 걸
체하지 않으려면
안전한 저녁을 보내려면

- 최영미, 혼자라는 건

전생(前生)부터 떠돌던
늘 갈무리도 못 할 길만 찾아 헤매기만 하던
바람 한 줄기
불현듯 내게로 왔다

꿈결 같은 한 세상 잠시 기대듯
머물다 가리라던 바람은 눈물 글썽이며 다시 일어선다
물 위의 부표처럼 늘 흔들거렸던 제 생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저문 강가에 고독을 한 움큼 쏟아 내고도 밤새워 뒤적이던 몸짓
소리를
제 몸이 늘 마른다는 슬픈 소리만 남긴 채

내 가슴에 쌓인 아린 소리로
이날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느 한 곳에 잠시도 눕지 못하는
바람의 아픔이었다.

- 김선옥, 눕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인간이란 여인숙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우울, 초라함
몇 가지 순간적인 깨달음들이
뜻밖의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하라
그들이 한 무리의 슬픔이라서
그대 집을 난폭하게 휩쓸고
가구들을 다 없애더라도
여전히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여 대접하라
아마도 그는 새로운 상패함을 위해
그대를 청소해주는 것일테니

- 무울라나 잘랄에딘 모함마드 루미, 여인숙(The Guest House)

(중략)

너는 너의 말들로 나를 쓸 수 있고,
너의 눈빛으로 나를 조각낼 수도 있고,
너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거야.

나의 섹시함이 네 속을 뒤집었나?

내가 넓적다리가 만나는 곳에
다이아몬드를 품은 듯 춤을 추어서,

네가 많이 놀랐나?

부끄러운 역사의 오두막으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고통의 뿌리인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서리

나는 검은 바다, 뛰어오르고 퍼지고,

파도 속에 숨구치고 부풀어 오른다.

테러와 공포의 밤들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선조들이 내게 준 선물들을 안고서

나는 일어서리

나는 노예들의 희망이며 꿈이니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나는 일어서리

- 마야 앤젤루,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 중에서

내가 젊고 대담하고 강했을 때,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깃털 장식을 세우고 깃발 날리며

세상을 바로잡으러 달려 나갔다.

“나와라, 개××들아, 싸우자!”고 소리치고,

나는 울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 도로시 파커, 베테랑 중에서

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숨겨가는 한 마리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다시 살게끔 한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 에밀리 디킨슨, 내가 만일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 에드윈 마크햄, 원.



부록 1.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정규정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정규정

제정 2018. 3. 28. 규정 제25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행정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상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상담원 및 연구조교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실의 구성) ① 인권상담실에 약간 명의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7조(인권상담실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행위와 고충민원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지원과 구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3.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
4. 인권침해행위, 고충민원,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5.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성평등상담실의 구성) ① 성평등상담실에 약간 명의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평등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성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9조(성평등상담실의 기능)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지원과 구제
2.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3.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교내 구성원 및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 및 평가
3.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
4.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5. 예산과 결산

6.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구성하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13조(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조치
4. 기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조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센터장, 상담원, 센터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와 구제

제16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 개시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2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센터의 사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규정 제2524호,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록 2. 인권 침해 및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 경찰

- 강력사건 발생 시 초기에 현장 출동, 범죄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평가·상담활동을 통해 범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절차** :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각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피해자보호팀)에 지원 요청

✓ 피해자임시숙소제도 ⇨ 경찰

-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
- 피해자 신청(사건조사 시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제도 안내) → 심사권자가 필요성 판단 후 승인 → 임시숙소 연계 → 임시 숙소로 비용 지급

✓ 진술조력인제도 ⇨ 경찰/해바라기센터

-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3세 미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경험자의 경우도 해당하며,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장애가 의심될 때도 활용할 수 있음.

✓ 가명조서제도 ⇨ 경찰

- 성폭력피해경험자가 인적사항을 경찰 기록 등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사건 조사에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진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제도.
- 모든 성폭력범죄의 범죄 신고자 등에게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변호인)이 진술조서, 진단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적극 고지하고,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증거능력 인정.

* 사법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을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하려면? 담당검사실에 우편물 수탁 주소지 변경 신청서 제출.

✓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 검찰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 검찰

-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에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신청절차** : 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제출 →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 → 검사 결정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전비 지급

✓ 주거지원제도 ⇨ 검찰

-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 공급),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범죄피해자확인증 신청(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입증자료 제출 → 범죄 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국토해양부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절차 진행

✓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전담검사제도 ⇨ 검찰

-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제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술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 형사조정제도 ⇨ 검찰

-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
- **지원절차** : 피해자가 담당 수사검사에게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 검사가 조정회부 여부 결정 → 형사조정절차 진행(조정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자료제출 가능) → 형사조정결정문 작성 및 형사조정절차 종료

✓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함.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요청 가능.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구조(02-883-9285) :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해경험자는 피해자지원기관에 상담하고 요청해야 함.

법률홈닥터 :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http://lawhomedoctor.moj.go.kr/>)

✓ 증인지원제도 ⇨ 법원

- 법원이 형사재판의 모든 증인에게 재판 및 증인신문의 절차/법정의 위치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제도. 특히, 성폭력피해경험자의 경우 가해자나 그 친척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된 증인지원실로 안내를 하고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증언을 마친 이후에도 별도의 출입구로 나가도록 함.
- 증인지원관이 법정에 증인과 동행하거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화상증언 가능. 별도로 마련된 화상증언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법관과 검사 또는 변호사만을 보고 증언

✓ 화해제도 ⇨ 법원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 **지원절차**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가해자)과 합의 → 피고인과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형사피고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 배상명령제도 ⇨ 법원

-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
- **지원절차** :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심리 → 법원의 결정

✓ 긴급복지 지원 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 소득자의 사망, 구금 기결 수용, 중한 질병, 가정폭력, 학대, 화재,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회 300만원 이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 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접수 및 상담 → 보호시설 연계

✓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경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등의 의료비, 간병비, 돌봄 비용을 지원

- 가족도 지원되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지원. 의료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구조제도

-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절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이주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체류 허용

- 체류 외국인이 성폭력범죄 등을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허용

✓ 이주여성 지원제도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보호시설 긴급지원서비스 수행(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다누리가족지원포털(<https://www.liveinkorea.kr>) : Danuri Portal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Korean life and latest multicultural community news in 13 languages.)

✓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통한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주여성에게 1345 콜센터를 통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를 방지

✓ 112 영어 문자 서비스

- 112에 영어로 문자를 보내면,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보낸 사람의 위치와 메시지 내용을 그 지역의 경찰청에 전달

✓ 보험급여 지원제도

- 범죄피해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험 급여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절차 :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

-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지원절차 : 사자 유족 또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 자치단체 →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부록 3. 부산·울산·경남 인권 침해 및 성폭력 관련 지원단체 및 기관

지역	구분	기관 및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	성폭력 · 대학	경성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051-663-5328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09
		고신대학교 양성평등상담실	051-990-2346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194
		동명대학교 성평등상담실	051-629-0396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428
		동서대학교 양성평등상담실	051-320-212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산69-1
		동아대학교 성폭력상담실	051-200-647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의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051-890-178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76
		부경대학교 인권센터	051-629-7096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45
		부산가톨릭대학교 성평등상담실	051-510-052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류대로57
		부산교육대학교 성평등상담실	051-509-521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24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성평등 051-510-7890 인권 051-510-794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외국어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051-509-5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신라대학교 성고충상담실	051-99-628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한국해양대학교 성평등상담실	051-410-41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지역	구분	기관 및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	성폭력 · 상담소	기장열린성 가정상담소	051-531-1366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로 290 동양프라자 404호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051-753-1377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광안동)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051-624-558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 (남천동)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 상담센터	051-817-43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15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051- 558-8832~4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523 SK허브스카이 A3동06호
		부산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051-583-7735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4층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051-506-2590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안락동) 3층
	인권 기관 및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051-710-9710 (국번없이 133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2동)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부산참여연대 알바권리지원센터	051-633-4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
		부산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051-442-088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 센트럴오피스텔 1404
		부산장애인권익 옹호기관	051- 715-8295~6 (장애인학대신고 전화 1644-82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25 이오스플라자 301호
울산	성폭력 · 대학 및	울산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052-259-2645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UNIST 인권센터	052-217-409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50
		동구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052-252-6778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18 2층

지역	구분	기관 및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울산	상담소	생명의전화 울산지부 가정· 성폭력통합상담소	052-265-5570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울산성폭력상담소	052-245-1366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3층)
		울산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052-246-136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02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고용평등상담실	052-274-4651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29
	인권 단체	울산장애인 인권센터	052-274-900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4길 12 4층
		울산인권운동연대	052-242-1119	울산광역시 중구 동서관길 50 3층
경남	성폭력 · 대학	가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055-330-118 /1108	경남 김해시 삼계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55-751-3505	경남 진주시 동진로33
		경남대학교 양성평등센터	055-249-29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경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055-772-0832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01
		영산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055-380-9113	경남 양산시 주남로288
		인제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055-320-3533	경남 김해시 인제로197
		장신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055-320-2550	경남 김해시 구산동746
		진주교육대학교 상담센터	055-740-1174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창원대학교 평등인권센터	055-213-262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20
		거제YWCA 성폭력상담소	055-682-0361	경남 거제시탐곡로75길2층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지역	구분	기관 및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경남	성폭력 ... 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055-944-18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번지 2층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055-244-8400,900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4호, 505호
		경남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055-241-504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804호
		김해 성폭력상담소	055-329-645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95 화성빌딩 202호
		밀양시 성가족상담소	055-391-1366	경남 밀양시 중앙로 268 (삼문동, 여성회관)
		사천 성가족상담센터	055-852-9040	경남 사천시 수양로 126, 3층
		양산 성가족상담소	055-366-6676/6663	경남 양산시 중앙로61, 204호
		진주성폭력상담소	055-746-7462	경남 진주시 남강로477번길11. 2층
		진해성폭력상담소	055-546-8322	경남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16
		창원 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055-283-83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42 토월복합상가725호
		창녕 성건강가정상담소	055-521-1366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172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	055-648-2070	경남 통영시 동충1길 4(항남동)
		하동성가족상담소	055-884-1360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번지
		함안성가족상담소	055-587-1367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70, 1층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55-264-504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5 경창상가 5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주변 시설 찾기' 서비스(<https://bit.ly/2rYVoh>)를 검색하면 내 주변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5), 『인권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2017),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2012~2017),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김학성(2007), 『헌법학 강의』, 강원대학교 출판부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크 제3차 심포지움(2018), “1985~2005, 다시 만난 부산대학교 여성운동”, 『시대를 넘어 페미니스트를 만나다』

엘렌베스, 로라 데이비스(2012), 『아주 특별한 용기』, 동녘

여성가족부(2018),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정희운(2009), 『너 아니면 나: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셀프 가이드』, 이매진

조효제(2015), 『인권오딧세이』, 교양인

최영미(2017), 『시를 읽는 오후』, 해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2018), 『키워드로 만나는 가이드』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이매진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2018),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전환과정 기본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권 및 성폭력 상담 Guide Book

2019년 2월 인쇄

2019년 2월 발행

연구개발 : 고헤경, 윤소윤, 지영경

편집 : 임애정, 조누리

발행인 : 오정진

발행처 :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무한한 올림이
만나는 여기, 인권센터!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장전동) 기계기술연구동 405호

<http://equality.pusan.ac.kr>

인권상담실 ☎ 051)510-7942 ✉ humanrights@pusan.ac.kr

성평등상담실 ☎ 051)510-7890 ✉ safety@pusan.ac.kr